

[서식 예]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

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

청	구	인	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 : -)
			전화 :	
		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ㅇㅇ번지	
			사건본인과의 관계 :	
λl	건 본	٥ì	□ □ (주민등록번호 : -)
^\F	신 단	닌	전화 :)
		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ㅇㅇ번지	
			등록기준지 ○○시 ○○면 ○○길 ○	번지
			નો 🗇 નો નો	

청구취지

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.

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○○○년○○월○일 ◎◎법원 2013느단 ○○○○호로 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한정후견인으로 □□□가 선임되었습니다.
- 2. 위 심판에 의하면,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1. 재산관리

가. 부동산의 매각, 구입



- 나. 예금계좌의 개설 변경 해약 입급 이체 인출
- 다. 유체동산의 구입・보관・관리・처분
- 라. 근로계약의 체결・변경・종료
- 2. 신상보호
 - 가.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및 비용의 지급
 - 나. 의료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및 비용의 지급
- 3. 그런데 사건본인이 문구도매업을 하는 ◇◇상사에 근무하게 되어 물건의 구입·보관·관리·처분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 성이 발생하였습니다.
- 4.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기를 바랍니다.
- 5.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첨부서류

- 1.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(청구인 및 사건본인) 각 1통
- 2. 주민등록등본 (사건본인)

1통

- 3.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) 1통
- 4.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(1.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)
- 5. 기타(소명자료)

각 1통

2000 . . .

위 청구인 ㅇㅇㅇ (인)

ㅇㅇ가정법원 귀중



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

I. □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
II. □ 피후견인이 아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.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 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
1. 재산관리 가. □ 부동산의 관리·보존·처분 □ 매각 □ 구입 □ 임대차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□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□ 전세권,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·변경 □ 부동산의 신축·증축·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·종료 나. □ 예금 등의 관리 □ 예금 계좌의 개설·변경·해약·입금·이체·인출 □ 증권 계좌의 개설·변경·해약·입금·이체·인출 다. □ 보험에 관한 사항 □ 보험계약의 체결·변경.종료 □ 보험금의 수령
라. □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□ 정기적 수입(임료, 연금, 사회보장급여 등)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□ 정기적 지출(임료, 요금, 보험료, 대출원리금 등)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□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. □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·포기 바. □ 유체동산의 구입·보관·관리·처분 사. □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. □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□ 근로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□ 임금의 수령
2. 신상보호 가. □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□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및 비용의 지급 □ 복지시설·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. □ 의료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및 비용의 지급 3. 기타
가. 🗆 소송행위 등



□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						
□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						
나. □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						
다. 🗆 기타 사항						
4. 법원의 허가사항						



제출법원	사건본인(피후견인이 될 사 람)의 주소지의 가정법원	관련법규	민법 제13조제2항, 가사소송법 제44조		
신 청 인	인 본인, 배우자, 4촌 이내의 친족, 한정후견인, 한정후견감독인, 기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				
비용	 인지액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송달료: 청구인 수 3,700원(우편료)×10회분 				
기 타					